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11782(본소), 2022나201179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11782(본소), 2022나2011799(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가합11220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기수

피고, 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곽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상준, 김민혁

변론 종결2023. 3. 22.

판결 선고2023. 4. 19.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가합112202(본소),
2021가합105720(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163,399,050원, 피고 B은 53,882,3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5. 29. 광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4011호로 공탁한 25,554,188원과 같은 법원 2020년 증 제6호로 공탁한 액면금 97,000,000원의 유가증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하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6행의 "G"을 "W"로 고쳐 쓴다.

○ 3면 8행의 "피고 A"을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 5면 11~12행, 6면 5행, 6면 9~10행, 6면 10행의 각 "F"을 "망 F"으로 고쳐 쓴다.

○ 5면 12행의 "E"을 "망 E"으로 고쳐 쓴다.

○ 7면 5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X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9. 16. M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B으로, 피보험자를 망 E으로, 만기 시 및 상해·입원 시 보험수익자를 망 E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피고 B으로, 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각 정한 N(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10,000,000원을 즉시 입금한 사실, 망 E이 2013. 1. 9. 사망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인 피고 B이 2013. 2. 20. 보험금 21,049,745원을, 2014. 3. 28. 배당금 69,012원을 각 수령하는 등 합계 21,118,757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 B이 수령한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망 E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인 망 E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망 E의 사망 직전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는바, 위 보험금은 망 E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우회하여 피고 B에게 상속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은 연금공제보험계약으로서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 후인 2014. 9. 16. 연금개시가 되어 망 E에게 확정형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 망 E은 2013. 1. 9. 만 70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수령한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위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등 참조)].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 8면 18 내지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을가 제5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2,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Y조합에 대한 2022. 10. 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13. 10. 2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피고 C 명의의 Z조합 계좌에 합계 1억 9,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이체 또는 현금 입금한 후 2013. 10. 22. P 상가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② 2013. 10. 23. 망 F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이 이체되기 직전인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Z조합 계좌에서 망 F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3. 10. 25. 망 F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피고 B의 남편인 H 명의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이 CD이체되기 직전인 2013. 10. 24. 피고 C 명의의 Z조합 계좌에서 망 F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③ 또한 2013. 11. 15. 피고 C 명의의 Z조합 계좌에서 7,8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 B이 같은 날 광주 광산구 Q아파트 AA호의 소유자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망 F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사실, ④ 이후 2013. 12. 13.부터 2014. 2. 17.까지 망 F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5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이 부분 횡령 주장에 대한 피고 B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망 F의 의사에 반하여 망 F의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임의로 출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9면 10행부터 12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 C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이 사건 본소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 B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C을 상대로 하는 소로서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4. 8. 31.에는 이 사건 토지의 존재 및 피고 B의 상속재산 침해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25.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8115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2014. 8. 31.경 원고, 피고들 및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향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있고, 이는 위 합의를 전제로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C이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본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2016. 7. 1. D과 사이에 상속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시 2019. 6. 28. D과 사이에 상속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C이나 B이 내기땅(광주 광산구 S 소재 토지를 말한다. 이하 '내기땅'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내기땅이 문제되었을 경우에만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상속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본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들 및 D은 2014. 8. 31.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향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그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163,399,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음을 전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피고들 및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임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향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피고 C 및 D이 2014.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지한 후 2014. 8. 31.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10,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또는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피고들 및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향후 1/4 지분씩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4. 8. 31.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될 당시는 원고, 피고 C 및 D이 이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이었음에도, 이 사건 이행각서상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둔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공증이나 공탁"이 실질적인 명의신탁 개념에 해당한다거나 위 이행각서 자체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합의서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이행각서의 기재내용이나 문구 등에 비추어 이를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합의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C이 2014.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친 망 F이 2016. 3. 19. 사망한 후 원고, 피고들 및 D은 망 F의 상속재산까지 포함하여 부모의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논의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당초 망 E 명의의 부동산이던 광주 광산구

AD 소재 부동산(일명 'AD구옥주택') 및 이 사건 토지, 당초 망 F 명의의 부동산이던 나주시 AE 등지 소재 선산(일명 '선산'), 광주 광산구 AF 등지 소재 토지(일명 '신촌택지'), 광주 광산구 AG 소재 토지와 AH, AI, AG, AJ 소재 주택(일명 '고향집'), 광주 광산구 AK 소재 토지(일명 '학교땅') 및 내기땅, 피고 C 명의로 매수한 P 상가주택과 D의 처인 AL 명의로 매수한 광주 광산구 AM 소재 주택(일명 'AM 주택') 등의 부동산 내지 그 처분대가 가운데 자신이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1/4 상당의 몫을 현금 또는 부동산으로 그 내역을 변경해 가면서 계산, 주장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4 지분을 요구하였을 뿐 위 나머지 상속재산 등과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16. 7. 1. D과 사이에 '상속재산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D에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나 법적 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산 상속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9. 6. 28. 위 상속 합의서를 무효화하고 다시 협의한 내용으로 '최종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D이 기존에 지급한 현금자산(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고향집의 토지와 주택, 학교땅을 원고의 상속재산 몫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미합의된 망 F 명의의 잔여 상속대상 내기땅을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거나 향후 상속재산 분배대상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④ 원고나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였다거나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위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로서 그 역시 무효인데다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C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원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한하여 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으로

피고 C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입증하면, 그 이후에 피고 C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사항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 C이 먼저 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원고, 피고들 및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향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공도일

판사성언주

판사최항석

1) 더욱이 피고 B은 2014. 9. 1.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제출한 정산내역자료에 "I조합공제: E(망 E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000,000원"라고 기재하였다(을가 제6호증, 7면).